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38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장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공정한 사회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기본법」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경우, 그 ‘희생·공헌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제도 또는 절차 안내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음
- 아울러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은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으로 ‘희생·공헌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청년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보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임
- 이러한 보훈정책의 미흡한 부분이나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청년 제대군인들의 공정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며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 시장은 군복무 중 부상 당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등의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 지원 노력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5조)

- 시장은 군복무 중 부상 당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다.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8조)

-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상담센터’의 운영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

라. 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정보제공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수집·관리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입법예고('22. 6. 2. ~ 6. 22.) 결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전상·공상 청년 유공자,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 등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장해”라 함은 「군인재해보상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3. “제대군인”이라 함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상근 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4. “전상 청년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공상 청년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질병을 포함한다)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서 상(질병을 포함한다)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이라 함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질병을 포함한다)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이하 "신체검사"라 한다)에서 상(질병을 포함한다)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청년 장애 제대군인 상담센터"라 함은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장애를 입은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에게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훈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이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애를 입은 제대군인
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애로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
3.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애로 전역 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한 사람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청년 장애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 장애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 제대군인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훈관련 법률상담 및 행정절차 등 정보제공
2.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3. 취업상담 및 일자리 정보제공 등 지원
4.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상담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대행·위탁) ① 시장은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 ① 시장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제공자에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정보의 요청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6조~제7조 청년 장애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발생이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비용추계서 제출범위)

-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현재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추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보조사업 등으로 진행 중인 바, '22년 사업예산은 3억원임
- 아울러 동 사업의 '23년 추진에 있어 사업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실제적인 사업 규모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에 따라 추계가 어려움

4. 작 성 자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이향림(02-2133-7330)